

[서식 예]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익의 소상속인에 대해 승계집행문 부여후 한정승인 신청이 수라된 경위

소 장

원 고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 시 ◇ 수 ◇ 실 ◇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2017가합XXX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가 2018. ◎. ●. 부여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외 망 ◎◎◎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 이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불허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승계집행문 부여

가. 피고는 원고의 부(父)인 소외 ◉◉◉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



여 ◎◎지방법원 ◆◆지원 2017가합XXX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승소 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은 2017. ◘. ⑩. 확정되었습니다. (갑 제1호증 판결문 참조)

나. 그리고 위 판결 확정 이후 소외 ●●●은 2018. O. X. 사망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소외 망 ●●●의 자녀인 원고가 소외 망 ●●●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 ◆◆지원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지방 법원 ◆◆지원 법원사무관은 위 승계집행문을 2018. ◎. ●. 부여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승계집행문 참조)

2. 워고의 한정승인 결정

그런데 소외 망 ●●●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미 소외 망 ●●●이 사망한지 3개월 내인 2018. X. X.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가정법원 2018느단 ⑩⑩⑩⑪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갑 제3호증 상속한정승인 결정문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피고가 소외 망 ◉◉◉을 상대로 하여 승소한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및 위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소외 망 ◉◉●으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불허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문

1. 갑 제2호증

승계집행문

1, 갑 제3호증

상속한정승인결정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상속재산목록



관 할 법 원	※ 아래(1)참조	제출기간	집행문부여 후부터 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 인지액: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 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6조제 2호) •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타	 이 소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專屬管轄)임(민사집행법 제21조). 이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수 있는 것으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효력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외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수도 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 64810 판결).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채무자만이 그 승계사실을 다투어 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소를 제기할수 있다(대법원 1973. 5. 22. 선고 70다1090 판결). 		

※ (1) 관 할

- 1. 판결·심판: 제1심 판결법원 또는 가정법원(민사집행법 제44조제1항,제45조)
- 2. 지급명령 :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민사집행법 제58조제4항)
- 3. 집행증서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



(민사집행법 제59조제4항)

- 4. 소송상의 화해, 인낙조서 : 제1심의 수소법원(민사집행법 제57조, 제44조) 항소심(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
- 5. 제소전 화해조서, 조정조서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그 절차를 행한 지방법원 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항소심(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제1 심 법원이 관할법원.
- 6.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은 전속관할임.(민사집행법 제21조)